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77
----------	-----

제출년월일 : 1998. 6. 10.

제 출 자 : 고 성 군 수

1. 개정이유

-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상위법령과 일부 일치하지 않거나 미흡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보완 개선코자 함.

2. 주요골자

-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명칭 정비(안 제1조)
-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항 보완(안 제2조)

3. 근거법령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법시행령 제34조

4. 입법예고 : 입법예고 불필요

5. 본 문

고성군조례 제 호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고성군지원사업특별회계"를 "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중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을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고성군지원사업특별회계</u>(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제10조의 규정에 따른 <u>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u>을 말한다.</p>	<p>제1조 (목적) 이조례는 - - - - -</p> <p>- - - - -</p> <p>- - - - - 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고성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u>(이하 "회계"라 한다)를 - - - - -</p> <p>제2조 (정의) - - - - -</p> <p>- - - - - <u>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과</u> - - - - -</p>